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가단520318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205,648원 및 그 중 13,558,955원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0.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2. 11. 15.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08,700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2022.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22. 11. 15.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조해근

별지